공 개

의안번호	제 7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9. (제 8 차)

의결사항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4. 19.

1. 의결주문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태성회계법인의 2018. 4. 1.부터 2022. 3.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태성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내용 >>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관리 권한 및 책임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미흡 ②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의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의 운영 미흡 ②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③ 독립성 위반 등에 대한 사추조치 관련 절차의 운영 미흡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라. 인적자원	① 업무배정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② 인적자원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③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마. 업무의 수행	① 업무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② 업무품질관리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③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바. 모니터링	① 사후심리 관련 절차의 운영 미흡

나.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처리안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회계관리국)에 통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2023.3.30. 제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8인 중 8인) 금감원 원안 동의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2)

<별지>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다 음 -

1. 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 태성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

2. 처분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태성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회계관리국)에 통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처분이유

1.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관리 권한 및 책임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있고, 사업본부 관련 규정과 사업본부장 및 업무수행이사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외부감사법 등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내부 조직구조 관련 사항과 사업본부장 및 업무수행이사 등의 권한,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2.「품질관리기준서1」문단 18, 한18-1, A5

②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이사를 포함한 구성원의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품질 우선의 성과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목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18, A5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1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확인서에 대한 서명 누락, 기한 후 서명 등 독립성 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용관계 및 주식거래의 시스템 입력 소홀,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미비 등 독립성 점검 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미흡함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독립성 준수 확인서, 재무적 이해관계 및 고용관계,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 등 독립성 관련 정보가 적시에 완전히 등록되고 정확히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21, 22

2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수임 및 감사예정 고객에 대한 독립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됨

- 감사대상 회사의 비감사업무 수임 시 품질관리실이 계약서를 통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정책과 절차가 없고 특정 업무로 분류 시 독립성 점검을 생략하는 등 독립성 위반 식별 절차가 미비하며,

- 감사 예정 고객에 대한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 회신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 법인 내 구성원의 주식거래 자체 점검 시 예탁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여 주식 거래 및 보유 내역에 대한 완전한 확인이 미흡함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이후 업무를 수임하고 주식거래 점검 시 실제 주식 거래 및 보유 내역이 완전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20, 23

3 독립성 위반 등에 대한 사후조치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구성원의 독립성 관련 정책 및 절차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독립성 위반이나 독립성 관련 회계법인의 정책 및 절차 위반 사실이 식별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 및 성과평가 등 사후 조치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23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1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용 및 유지를 위한 위험평가 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됨

- 위험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며, 감사계약 체결 이후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계약전 위험평가 시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위험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계약 전 위험이 높게 평가된 회사에 대하여 감사수행 단계 전반에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없음

- 위험평가 완료 이후 추가정보 입수로 인하여 재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위험 수준 결정 및 위험평가 재수행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파악된 위험 또는 이슈에 대해 감사수행 단계 전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 계약 전 위험평가표 점검 강화를 통하여 업무 수용 및 유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26, 27

라. 인적자원

① 업무배정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구성원의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감사업무 배정 시 담당 이사 등의 업종별 전문성 고려가 미흡하며,

- 감사업무 배정을 위한 가용시간 검토 시 비감사업무 수행 시간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등 업무 배정 관련 정책과 절차가 미흡함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법인 차원에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구성원의 적격성과 가용시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등 감사업무 배정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30, 31

2 인적자원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구성원의 신규 채용 시 공인회계사 징계 사실 확인서를 입사 후에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법인 차원의 채용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 이사 승진시 업무품질과 윤리적 원칙 등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고, 구성원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신규인력 채용 및 이사 승진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역량 및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문단 29, A24, A26, A28

3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의 감사업무시간 입력, 수정 및 승인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견됨

- 업무시간 입력기한이 익월 15일까지로 최대 6주 전의 시간이 입력될 수 있고, 입력기한 이후에도 입력에 제한이 없어 투입 시간이 적시성 있게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구성원은 승인된 감사시간을 수정하면서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있지 않고, 감사업무시간 승인권자와 변경 승인권자가 동일하여 수정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할 소지가 있음

- 업무시간의 지연입력 또는 지연승인·미승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법인 차원의 징계 규정도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시간 입력, 승인된 업무시간 수정이 적시성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내규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 한A31-1

마. 업무의 수행

① 업무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가 미흡하며, 감사조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이사의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의 충분한 감독·검토를 위하여 최소 투입시간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조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2

② 업무품질관리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완료되기 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업무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내규상 사전심리 요청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며,

-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구체적인 검토내용 및 수행 절차의 문서화가 미비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 내용의 문서화, 충분한 시간 투입 요구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완료된 이후 보고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5, 36, 42

3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조서가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입고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입고된 조서의 출고 시 임의 변경·추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며,

- 분사무소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서면조서의 경우 품질관리실에서 전산으로만 입·출고를 관리하고 감사조서에 대한 실사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조서의 적절한 취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분사무소를 포함한 전체 감사조서의 취합·보관·관리의 적시성과 완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감사조서의 임의변경·추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5, 46, A57, A58

바. 모니터링

1 사후심리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흡)

○ 태성회계법인은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완료 기한이 없고,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시에 수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태성회계법인은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에 적합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보완 및 개선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후심리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8 내지 52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② (생략)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④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⑨ (생략)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⑥ (생략)

⑦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 **외감규정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다. 생략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18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나 사원총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한18-1, A4-A5 참조)

문단 한18-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18 참조)

문단 20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7-A10 참조)

문단 21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구성원(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 포함)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함.

(b)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평가하고,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함. (문단 A10 참조)

문단 22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범위 포함)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한다.

(b)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c)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한다.

(i)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i)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한다.

(iii)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3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구성원들은 자신이 알게 된 독립성 위반을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b) 회계법인은 이러한 정책과 절차의 위반을 식별한 경우, 다음의 사람들에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i) 회계법인과 더불어 독립성 위반에 대처할 책임이 있는 업무수행이사

(ii) 적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회계법인(적절한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 내의 다른 관련 구성원 및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자

(c)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상기 (b)(ii)에서 언급한 다른 개인들은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6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문단 A18, A23 참조)

(b)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c)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문단 A19-A20, A23 참조)

문단 27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문단 A21, A23 참조)

(b)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문단 29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24-A29 참조)

문단 30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b)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c)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문단 A30 참조)

문단 31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문단 한A31-1 참조)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31 참조)

문단 32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 (문단 A32-A33 참조)

(b) 감독책임 (문단 A34 참조)

(c) 검토책임 (문단 A35 참조)

문단 35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포함함)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b)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문단 A41 참조)

(c) 상기 (b)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문단 42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문단 45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4-A55 참조)

문단 46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문단 48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b)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c)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문단 A64- A68 참조)

문단 49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들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불충분함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경우

(b)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기타 유의적인 미비점

문단 50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9 참조)

문단 51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b)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c)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d)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림.

문단 52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 중 절차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관련된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며, 법률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5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함.

(b)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함.

(c)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하며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

문단 A24 회계법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과 절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채용
·업무수행 평가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 역량
·적격성
·경력 개발
·승진
·보상
·인력수요의 추정

회계법인은 효과적인 채용 과정과 절차를 통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적절한 특성을 갖춘 성실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6 회계법인 구성원들의 적격성 유지는 구성원들의 지식과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상당한 정도로 좌우된다.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는 모든 직위의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

문단 A28 업무수행의 평가, 보상 및 승진 절차는 적격성 및 윤리적 원칙 준수의 향상과 유지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한다. 회계법인이 적격성 및 윤리적 원칙 준수의 향상과 유지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구성원에게 업무성과와 윤리적 원칙에 관한 회계법인의 기대를 인식시킴.
·구성원에게 업무성과, 발전 및 경력개발에 관하여 평가와 자문을 함.
·구성원이 더 큰 책임을 지는 지위로 승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성과의 품질과 윤리적 원칙의 고수에 좌우되며,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킴.

문단 한A31-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31 (a) 참조)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그 감사시간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계된 감사시간 기록의 임의적인 수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붙임2)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실장 선임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사업본부 관련 규정과 사업본부장 및 업무수행이사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관리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 설계가 미흡함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품질 우선의 성과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고용관계 및 주식거래 입력 미비,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종속회사, 특수관계 등 정보 업데이트 미비, 감사대상 회사의 비감사업무 수임 시 세부 내용 검토 소홀 등 독립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됨

- 감사계약 체결 전 독립성 여부 확인 절차 및 감사업무 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확인서 점검이 미흡함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독립성 관련 정책 및 절차 발견 시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수임 평가 시 위험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며, 감사계약 체결 이후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계약전 위험평가 시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위험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발견됨

- 감사계약 체결 전 위험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발행된 감사보고서 등 추가정보 입수에 따라 위험평가를 재수행하는 절차가 미비함

○ **인적 자원**

- 신규 채용 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법인 차원의 공식적인 채용 승인 절차가 없으며, 이사 승진 시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이 없고, 회계법인 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 절차가 미비함

- 감사업무 배정시 담당 이사 등의 업종별 전문성 고려가 미흡하며, 감사업무 배정을 위한 가용시간 검토 시 비감사업무 수행시간 고려 절차가 미비함

- 감사업무시간 입력·승인 관련·수정 등에 대한 통제 및 검토 절차가 미흡하여 업무시간의 사전·지연입력 및 지연승인·미승인 사례 등이 발견되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법인 차원의 불이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가 미흡하며, 감사조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이사의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비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전 감사보고서 발행, 업무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 내부권고 수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내규상 사전심리 요청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며, 사전심리 검토 내용에 대한 문서화가 미비함

- 감사조서의 지연 입고 사례가 발견되었고, 입고된 조서 출고 시 임의 변경방지 등 장치가 미비하며, 분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서면조서의 경우 전산으로만 입·출고를 관리하고 실사 등을 통한 관리가 미흡함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완료 기한이 없고, 개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감사인감리실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864